

瑞山市住民監査請求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2002. 3. 27

총 무 위 원 회

##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2002. 3. 22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2002. 3. 22

라. 上程日字 : 2002. 3. 27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企劃監査擔當官 金知榮)

### 가. 提案理由

-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현행규정은 감사청구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대폭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청구인수를 대폭 완화 함.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행정의 공개와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2000. 6. 24일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감사 청구의 필수요건인 청구인수(현행 700명 이상)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현재까지 단 한건의 청구가 없는등 제도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 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감사청구인수를 200명 이상으로 대폭 하향조정 하려는 것으로 이는 중앙의 권고가 있으며 또한 부패방지법에 의거 감사원에 청구하는 국민감사 청구인수가 300명인 점을 감안하면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감사청구인수가 대폭 하향됨에 따라 자칫 감사청구가 남발되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小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 수정안 별첨

의안번호	제 25호
의결 년월일	2002. 3. (제 회)

##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2. 3. 22.

#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증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1
----------	-----

제출년월일 : 2002. 3. 22

제출자 : 서산시장

## □ 개정이유

지방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현행규정은 감사청구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주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대폭 하향 조정

## □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청구인수를 대폭 완화 개정(안 제2조)

## □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관련사업계획서 : 없음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서산시공고제57호(2002. 2. 10~2002. 3. 1)】

마. 기 타

-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방안(권고)시달 : 충남도 2002. 1. 29

- 부패방지법 개정(국민감사청구) : 2002. 1. 25제정

서산시조례 제 호

##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00명”을 “20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u>700명</u> 이상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 ----- ----- -----<u>200명</u>----- -----</p>